[서식 예] 건물인도청구의 소(무단전대, 주택상가 겸용)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정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김♦♦♦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건물인도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가. 피고 정◇◇ 은 원고로부터 95,000,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 - 나. 피고 김◇◇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m²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5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가)부분 ○○.○m²에서 퇴거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피고 정◇◇에게 20○○. ○. ○.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95,000,000원, 월세 1,000,000원,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.

- 2. 그런데 피고 정◇◇ 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지 및 월도 채 안되어 원고에게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일본 자신의 친구인 피고 김◇◇에게 월세 1,500,000원에 다시 세를 놓았습니다.
- 3.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정◇◇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임차물을 전대 차 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정◇◇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해줄 것을 통고하고, 피고 김◇◇에게는 피고 정◇◇로부터 전차하여 점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5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가)부분 ○○.○㎡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으나, 피고 정◇◇와 피고 김◇◇ 모두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정◇◇로부터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고, 피고 김 ◇◇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m²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5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가)부분 ○○.○m²에서 퇴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

1. 갑 제4호증의 1, 2 각 통고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토지대장등본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O. O. 의 원고 OO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-ㅇㅇ
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 생활시설

1층 ㅇㅇm²

2층 ○○m². 끝.

도 면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 2층근린생활시설 중 1층 평면도

1		2	3
	(가)	(나)	
4		5	6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『소멸시효일람표 www.kkg	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불복절차 및 기 간		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: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).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